



공정거래 신고제도에 대한 제언

이광우

LG전자 공정문화추진팀 과장

공

정거래정책의 목적은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할 뿐 아니라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의 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공정거래정책은 나라마다 그 정책방향 및 제도는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WTO체제의 출범으로 시장에 있어서 국가간의 국경이 사라지고 기업간 완전경쟁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OECD의 가입으로 국내산업에 대한 보호정책은 더이상 존속할 수 없게 되었다. 더구나 선진국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경쟁리운드'에 대한 논의는 향후 또 다른 무역제재의 수단으로 작용될 수 있음으로써 불공정거래 관행하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은 더이상 존속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공정거래정책의 국제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국내에 공정거래정책을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경제기획원 산하의 차관급 조직에서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된 장관급 중앙정부부처로 격상시킴으로써 그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고 공정거래정책을 강도있게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공정거래정책에 대한 흐름에 맞춰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율적 공정거래 준수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우리 LG그룹에서는 국내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공정과 정직을 바탕으로 한 윤리규범을 선포하였을 뿐 아니라, 95년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LG공정거래자율준수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정부의 공정거래정책의 확산, 중소기업보호정책과 기업의 공정거래자율준수를 위한 노력의 결과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사업의 동반자로서 인식하고 하도급대금의 60일이내 지급, 기술·자금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거래여건이 향상되게 되었다. 그런데 공정거래가 일반국민에게는 다소 생소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중소기업의 개인적 손해보상을 대행하여 주는 기구로써 잘못 인식된 경우도 있으며 대기업의 경우 기업 이미지는 기업의 중요한 요소로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업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기업에 압력행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

이 러한 현상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사건 중 약 70%가 공정거래법 관련사항이 아니거나 무혐의 처리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신고인의 신고절차를 간소하게 하고 피신고인에게 소명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신고인은 불공정거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고성의 신고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든 기업이든 국제경쟁의 시대에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여야 할 상황에서 이렇게 불필요한 사건에 시간과 인력을 낭비한다는 것은 곧 국제경쟁력 저해의 요인이 될 것이다.

공정거래정책의 목적이 소비자·중소사업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신고제도가 소비자·중소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70%의 무혐의 기각율은 제도개선을 위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고사건처리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신고인이 소비자·중소사업자이기 때문에 증거의 구비가 어렵다는 점과 신고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완벽한 증거자료를 구비하여 신고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신고내용의 중요핵심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토록 하여 사전에 공정거래법 관련 사항 유무를 확인함으로써 조사대상 신고건을 조정할 수 있으며,

둘째, 무고성 신고사건에 대해서는 제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요소라고 생각한다. 못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식의 신고로 인해 조사를 받아야 하는 피신고인의 입장에서 느껴야 하는 심적부담이나 경제적 비용은 차지하고라도 신고를 당했다는 사실이 꼭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우리나라의 풍토에서는 특히 더 그러하다.

이러한 제도개선이 기업에게도 공정거래지율준수를 위한 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향후 경쟁라운드가 결성되어 선진국의 무역제재의 수단으로 활용될 때 국내기업이 외국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하고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는 정부나 기업의 비용을 줄임으로써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